기획 - 감사

2016. 10.

- 상하수도사업소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예 산 군

목 차

□ 감사실시 개요

□ 감 사 성 과

□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

□ 처분지시서

2016년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결과

□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 2016. 10. 5.(수) ~ 10. 7.(금) / 3일간

○ 감사범위 : 2014. 11. 26. ~ 2016. 10. 4 / 2년간

○ 감 사 반 : 감사팀장외 2명

○ 감사중점사항

- 계약, 예산집행, 물품관리 등 적법처리 여부

- 각종 공사 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

□ 감사성과

○ 행정상 조치

(단위 : 건)

지 적 사 항					제도개선	우수사례	비 고
계	시정	개선	주의	현지조치			
6	4	-	2	-	-	-	

▢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

(단위 : 건, 천원)

일련번호	소 관	제 목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기타	계	추징	회수	감액
계		6건	6	4	2		2		187	1,606
1	관리팀	건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1	1						
2	상수도 운영팀	예산정수장 상황실 증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1	1			1			1,606
3	상수도 시설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1	1			1		187	
4	상수도 운영팀	행사실비보상금 부당 지출	1		1					
5	상수도 운영팀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1	1						
6	상수도 운영팀	정수장 근무자 건강검진 미실시	1	1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관리팀	2016	시정			

【제 목】 : 건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가. 현 황

(단위 : 원)

공사명	계약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자		비고
		시작일	종료일	상호명	대표자	
예산정수장 취수펌프 후드밸브 교체 공사	13,950,000	2015-07-16	2017-07-15	◆◆◆◆	★★★	
예산정수장 역지변 교체 및 송수배관 누수 보수공사	18,500,000	2015-07-17	2017-07-16	★★★★	◆◆◆	

나. 위법부당 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예산정수장 취수펌프 후드밸브 교체 공사” 외 1건에 대하여 감사당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다. 처분지시

○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상수도운영팀	2016	시정	감액	1,606천원	

【 제 목 】: 예산정수장 상황실 증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가. 현 황

○ 공 사 명 : 예산정수장 상황실 증축공사
○ 위 치 :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20-2
○ 공사개요 : 상황실 증축 2층(221.38㎡), 철근콘크리트조
○ 공 사 비 : 280,985천 원(도급 266,178천 원, 관급 14,807천 원)
○ 공사기간 : 2016. 04. 14. ~ 2016. 10. 10.
○ 도 급 자 : (주)◆◆ 대표 ★★★
○ 공 정 : 100%

나. 위법부당 내용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의하면 건설공사 감독자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내용이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67조(설계변경의 관리)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정수장 상황실 증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외부마감을 점토벽돌 및 수성페인트(외부)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시설물 외관을 고려하여 스톤마감 공법으로 변경추진하면서 스톤마감 공법의 실시공면적 168㎡가 아닌 176㎡를 적용하였고, 공법의 변경으로 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수성페인트(외부) 146㎡를 반영하는 등 공사비 1,606천 원에 대하여 감액하지 않고 설계변경 한 사실이 있음.

다. 처분지시

○ 상기 금액 감액하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상수도운영팀	2016	시정	회수	187,700	

【 제 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가. 현 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집행내역

(단위 : 개, 원)

사 업 명	구입내역	수량	구입금액	사용목적	비고
2016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몽곡2리)	칼라콘	20	140,000	공사현장 차량통행 제한	

※ 공사원가계산금액 187,700원

나. 위법부당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에 의하면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6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몽곡2리)”를 ◆◆◆◆(주) 대표 ★★★와 계약 시행하면서 위 현황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이 아닌 공사현장 차량통행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칼라콘을 구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였음에도 검토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 처분지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187,700원 회수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상수도운영팀	2014 ~ 2016	주의			

【 제 목 】: 행사실비보상금 부당 지출

가. 현 황

○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관련 행사실비보상금 지출현황

(단위 : 원)

날짜	참석인원	급식처	품의금액	지출가능금액	초과금액	비고
			800,000	280,000	520,000	
2014.11.20	10	◆◆◆◆	200,000	70,000	130,000	'14 하반기
2015.04.02	10	★★★★	200,000	70,000	130,000	'15 상반기
2015.07.30	10	◆◆◆◆◆◆◆	200,000	70,000	130,000	'15 하반기
2016.05.26	10	★★★★★★★	200,000	70,000	130,000	'16 상반기

나. 위법부당 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등 실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지출 해야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 상수도운영팀에서는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매식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총4회에 걸쳐 행사실비보상금 520,000원을 부당·초과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다. 처분지시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상수도운영팀	2016	시정			

【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가. 현 황

○ 공용차량 각종 일지 작성 부적정 현황

차량번호	차량	위법·부당사항	비 고
95모 1402	소형화물차(봉고)	차량 일지 기록관리 부적정	

나. 위법부당 내용

○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사용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미터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여야 하고, 배차당일에는 주행거리, 유류지급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동규칙 제26조에 “기록관리를 위하여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차량 정비대장 등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 한다.”라고 규정 있음에도,

○ 상수도운영팀에서는 2016. 5. 24부터 현재까지 공용차량(95부 1402)을 운행하였음에도 공용차량 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정비대장 작성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다. 처분지시

○ 공용차량 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정비대장 작성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상수도운영팀	2016	시정			

【 제 목 】: 정수장 근무자 건강검진 미실시

가. 현 황

○ 정수장 근무자 건강점진 실시여부

성 명	근무기간	비고
★★★	2012.01.16 ~ 현재	예산정수장
◆◆◆	2015.04.20 ~ 현재	예산정수장
★★★	2009.07.15 ~ 현재	예산정수장
◆◆◆	2015.07.20 ~ 현재	예산정수장
★★★	2008.08.08 ~ 현재	덕산정수장
◆◆◆	2016.07.29 ~ 현재	덕산정수장
★★★	2015.07.20 ~ 현재	덕산정수장

나. 위법·부당내용

○ 「수도법」 제32조(건강진단) 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건강진단) 따르면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를 6개월마다 1회에 검진을 실시해야하는 규정에도,

- 상기 근무자들은 건강 검진 받은 사실이 없음.

다. 처분지시

○ 취수·정수장 근무자에 대하여 건강정기검진을 받기 바람.